

『구미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7년 5월 25일

나.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다. 회부일자 : 2017년 5월 26일

라. 상정일자 : 2017년 6월 5일

제214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2017년 11월 28일

제218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설명자 : 건설도시국장 설 동 주

나. 제안이유

- 「소하천정비법」 등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상위 법령과의 통일성을 도모하고,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마련으로 시민 이해도 증진에 기여

다. 주요내용

- 「지방세법」에 따른 점용료등의 미부과 기준 정비(안 제2조)
 - 당초 : 600원 미만 점용료등 미부과
 - 변경 : 2,000원 미만 점용료등 미부과
- 「소하천정비법」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2조)
 - 당초 : 부당이득금
 - 변경 : 변상금
- 점용료등 산정기준 및 조정산식 정비(안 별표 1, 별표 3)
-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 정비

라.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소하천정비법」, 「지방세법」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
-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붙임)

3.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김 영 수

- 본 「구미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상위법인 「소하천정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점용료 등 산정기준 및 조정산식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개정하여 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